

정 정

◆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64호

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(변경)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-129호(2022.03.24.)로 고시된 “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(변경)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” 와 관련하여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2022년 4월 14일
서울특별시

1. 정정 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은 심의 등 관련절차 상 지정권자가 서울특별시시장으로서 서울특별시고시 사항이나, 단순착오로 인해 서초구 고시 되어 정정 고시 함.

※ 이 외에 정정 사항은 없음

2. 정정내용

<정정 전>

- 고시번호 : 서초구 고시 제2022-129호(2022.03.24.)

<정정 후>

- 고시번호 :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129호(2022.03.24.)

3.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변경)도서 참조(변경없음)

: 생략(비치한 도서와 같음)

4. 시민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(02-2133-7138) 및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 02-2155-7359)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